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6. . . (제 회)	

**서울특별시강북구  
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 
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주민생활지원과장
제출연월일	2016. . .

**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침**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- 2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2
- 3) 「민법」 제75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 조문 대비표: 별첨
- 1) 입법예고(2016. 03. ~2016. 04. .)
- 2) 부패영향평가 결과, 원안동의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원안동의

**1. 의결주문**

서울특별시강북구 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**2. 제안이유**

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바로 잡고,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함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가. 조례 제4조 제2항에서는 ‘구청장이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’, 제3항에서는 ‘신청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준한다.’고 되어 있어 구체적인 법령 조문을 표시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(안 제4조)

나.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및 삭제함(안 제5조, 안 제9조)

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조문을 정비함.  
(안 제1조 외4)

**4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강북구 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강북구 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강북구 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”로, “기타 복지시설(이하“시설”이라 한다)”을 “그 밖의 복지시설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시설”을 “서울특별시 강북구립 사회복지시설과 그 밖의 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”로, “강북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”을 “강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다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및 가사봉사”를 “및 가사 봉사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시설운영”을 “시설 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“관련사업”

을 “관련 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“및 보호육성”을 “및 보호 육성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및 사업을”을 “및 사업에 대하여”로,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,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로 선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설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.

제5조 전단 중 “국.공유재산”을 “공유재산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강북구”를 “서울특별시 강북구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관계공무원”을 “관계 공무원”으로, “장부 기타서류”를 “장부, 그 밖의 서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또는 검사결과”를 “또는 검사 결과”로, “관계규정”을 “관계 규정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,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강북구 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 한조례	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 법 제95조 제3항 및 사회복지사 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 울특별시 강북구립 사회복지시 설과 기타 복지시설(이하“시설” 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위탁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사회복 지사업법</u> 」 제34조에 따라 --- ----- ----- <u>그 밖의 복지시설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명칭과 위치) <u>시설의 명칭 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고시한다.</u>	제2조(명칭과 위치) <u>서울특별시 강북구립 사회복지시설과 그 밖 의 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-- 강북구청장(이하 “구청 장”--.</u>
제3조(사업) 시설은 다음 <u>각호의 사업을 관장한다.</u> 1. 장애인복지시설 가. 나. (생 략) 다. <u>기타</u>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련 사업 2. 노인복지시설 가. 시설에서 수용보호를 받지	제3조(사업) ----- <u>각 호 의</u> ----- 1. ----- 가.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2. ----- 가. -----

아니하는 불우한 노인을 위 한 상담 및 <u>가사봉사</u>	----- ----- <u>및 가사 봉사</u>
나. 노인을 위한 교양, 여가, 취 미, 이·미용 등을 위한 <u>시설 운영</u>	나. ----- ----- <u>시 설 운영</u>
다. <u>기타</u> 노인건강증진 및 복 지향상을 위한 사업	다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
3. 청소년복지시설 가. 나. (생 략) 다. <u>기타</u> 청소년 복지를 위한 사업	3. ----- 가.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
4. 아동복지시설 가. 나. (생 략) 다. <u>요보호아동의 양호대책 및 보호조치 관련사업</u>	4. ----- 가.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----- ----- <u>관련 사업</u>
라. <u>기타</u> 아동복지 증진에 관 한 사업	라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
5. 여성복지시설 가. (생 략) 나. 여성 직업교육 및 <u>보호육 성</u>	5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<u>및 보호 육 성</u>
다. <u>기타</u> 여성 봉사활동 등 여 성복지에 관한 사업	다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
제4조(운영의 위탁) ①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시설 <u>및 사업</u> 을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하게	제4조(운영의 위탁) ①----- ----- <u>및 사업</u> 에 대하여 -----

할 수 있다.	----- <u>있으며,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 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,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로 선 정한다.</u>
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 영자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로 지정한다.	<삭 제>
③제2항의 신청자는 법령에 정하 는 바에 준한다.	③ <u>시설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기 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 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 1조의2에 따른다.</u>
제5조(지원)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 며, 위탁운영에 필요한 <u>국.공유 재산을</u> 무상대여 할 수 있다.	제5조(지원) ----- ----- ----- <u>공유재산</u> 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.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·② (생 략) ③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· 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	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 ③-----

받아 신·증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강북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.	----- --- 서울특별시 강북구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감독)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잘 부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	제7조(감독) ①----- 관계공무원----- ----- -----장부, 그 밖의 서류----- -----.
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②----- 또 -----는 검사 결과----- ----- 관계 규정----- -----.
제8조(위탁의 취소)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	제8조(위탁의 취소) ----- 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수탁자가 제4조 제3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	<삭 제>
3. ~5. (생략)	3. ~5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손해배상 등)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	<삭 제>

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--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사회복지 사업법」

-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.>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8.4., 2012.1.26.>
- ③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8.4.>
-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., 2012.1.26.>
-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「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」

-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

- 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1.5., 2012.8.3.>
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11.5.>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11.5.>
-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7.3.7., 2008.11.5.>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 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- ⑤ 선정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[본조신설 2004.9.6.]

[제22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2.8.3.>]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9.6., 2012.8.3.>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9.6., 2012.8.3.>

#### □ 「민법」

제750조(불법행위의 내용)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